

貨換信用狀去來에서의 銀行의 새로운 書類審査基準

姜 元 辰*

-
- I. 序 論
 - II. 銀行의 書類審査慣行
 - III. 書類審査基準과 그 適用
 - IV. 書類審査基準 適用上의 問題點
 - V. 書類審査基準의 補完策
 - VI. 結 論
-

I. 序 論

信用狀去來는 곧 書類去來이다. 따라서 信用狀條件과 提示된 서류의 一致性與否를 審査하고 支給與否를 결정하는 것은 신용장거래의 重要한 機能이다. 그러나 一致性 判斷에 대한 具體的 基準은 信用狀統一規則上에 規定되어 있지 않다. 신용장거래는 傳統的으로 書類受理에 대한 法律原則으로 嚴密一致의 原則과 相當一致의 原則이 法廷에 의하여 適用되어 왔다. 실제로 서류의 受理與否를 결정하는 일치성 판단은 은행이 서류의 記載內容이 本質的인 不一致로 볼 수 없는 字句 하나에까지 엄밀일치만을 固守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商去來上 實益이 없을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은행이 매매당사자의 去來對象物品에 대한 專門的인 지식이 부족한 입장에서 자신의 裁量으로 相當一致의 原則을 적용하여 支給履行할 경우에도 오히려 신용장 발행은행은 신용장 발행의뢰인에게 신용장 대금의 補償請求를 하는데 障礙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最善의 書類審査基準은 무엇인가. 信用狀統一規則이 制定된 지 60

* 釜山大學校 貿易學科 助教授.

年이 될 때까지 同規則 속에 이렇다 할 서류심사의 基準은 提示하지 못하여 왔다. 따라서 신용장 당사자간에는 信用狀統一規則上에서 紛爭의 解決點을 찾기보다는 사사건건 法廷으로 가서 解決하는 경우가 許多하였다. 다행히 1993년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 改正되면서 書類審査基準으로 國際標準銀行慣行(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이라는 용어가 새로 導入되었다. 신용장의 解釋과 適用에 있어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은 앞서의 二元的인 신용장 거래 원칙을 하나의 慣行으로 提示한 것으로 우선 서류의 새로운 審査基準에 대한 銀行立場의 基準提示로 評價된다.

그러나 국제표준은행관행이란 무엇이며 具體적으로 어떻게 실무에 適用하여야 할지 疑問스럽다. 이 새로운 慣行은 과연 엄밀일치의 원칙 적용이 상당일치의 원칙 적용 쪽으로 轉換한다는 意味인지 誤解의 餘地가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信用狀統一規則에서 새로이 導入된 국제표준은행관행의 解釋과 適用에 관하여 傳統的인 서류심사관행을 바탕으로 考察하고 서류심사와 관련된 問題點을 把握하여 補完策을 提示함으로써 새로운 書類審査基準에 대한 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本 研究의 範圍는 신용장통일규칙상 銀行의 義務와 責任 중에서 書類의 審査基準과 不一致書類에 대한 規定(제13조~제14조)에 限定하였다. 또한 研究의 方法은 法院의 判例와 國際商業會議所 銀行委員會의 有權解釋을 分析·檢討하고 關聯 文獻을 參照하였다.

II. 銀行의 書類審査慣行

1. 傳統的 書類審査基準

信用狀去來에서 受益者가 文面上 一致하지 아니한 서류를 提示하였을 때 신용장 발행은행은 不一致內容이 중요한지의 與否를 決定하기 위하여 根據契約(underlying contract)을 調査하거나 審査할 수 없다. 그러한 조사는 신용장이 라는 支給手段의 장점, 즉 明確성과 迅速성을 沮害시킨다. 신용장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한다면 代金을 지급받아야 하며 만일 일치하지 않는다면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書類提示에 대한 一

致性判斷은 傳統的인 法院의 法律的 原則으로 嚴密一致의 原則(doctrine of strict compliance)과 相當一致의 原則(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이 성립되어 왔다. 신용장거래에서의 엄밀일치의 원칙 적용은 서류를 심사하는 銀行의 防禦의인 立場에서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信用狀의 本質을 해치지 않는 字句 하나까지 嚴格히 一致될 것을 요구하여 채무불이행을 원하는 은행의 安全한 避難處가 될 수 있다.

그동안 法廷에서는 書類의 嚴密一致性을 審査하는데 있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익자의 사소한 오타 등으로 인하여 鏡像의 原則(mirror image rule)과 같이, 즉 완전 일치되게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엄밀일치의 원칙을 緩和하고 상당일치의 원칙을 擁護하는 判決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모든 關係當事者는 書類로 去來를 하는 것이지 그 서류가 관련될 수 있는 物品, 서비스 또는 其他 履行으로 去來하는 것은 아니다.¹⁾ 실제로 은행은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개입할 능력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서류가 形式的으로 信用狀條件과 一致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受理與否를 결정하는 것은 當然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判例에 의하여 形成된 서류심사의 기준인 嚴密一致의 原則을 따른 事例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²⁾

Beyene v. Irving Trust Co. 사건³⁾에서는 信用狀이 船貨證券面에 貨物到着

1) UCP 500, Article 4.

2) *The London and Foreign Trading Corporation v. British and North European Ba* [1921] Ll. Rep. 116; *Bank of Italy v. Merchants National Bank*, [1923] 236 N.Y. 106; *S.H. Rayner & Co. v. Hambros Bank Ltd.*, [1943] 1. K.B. 37; *Bank Melli Iran v. Barclays Bank*, [1951] 2 T.L.R. 1057; *Soproma S.P.A. v. Marine & Animal By Products Corporation*, [1966] Lloyd's Rep. 367; *Marino Industries, Corp. v. Chase Manhattan Bank, N.A.*, [2nd Cir 1982] 34 U.C.C. Rep. Serv.(Callaghan) 637; *Far E. Textile, Ltd. v. City Nat'l Bank & Trust Co.*, 430 F. Supp. 193 [S.D. Ohio 1977]; *Kidon Compania Naviera S.A. v. National Westminster Bank Ltd. and others*, [1981] 1 Lloyd's Rep. 68 (the "Lena"); *Raiffeisen-Zentralkasse Tirol v. First Nat'l Bank*, 671 P. 2d 1008 [Colo. Ct. App. 1983]; *Bebco Distribs., Inc. v. Farmers & Merchants Bank*, 485 So. 2d 330 [Ala. 1986]; *Armac Indus. v. Citytrust*, 525 A. 2d 77 [Conn. 1987]; *American Nat'l Bank v. Cashman Bros. Marine Contracting*, 550 So.2d 98 [Fla. Dist. Ct. App. 1989]; 韓國 大法院 85. 5. 28 宣告, 84다카696, 697 判決.

3) 596 F. Supp. 438 (S.D.N.Y. 1984).

時的 着貨通知處로서 Mohammed Sofan이라고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제시된 船貨證券에는 Mohammed Soran이라고 기재하여 Sofan의 표시에 있어 “f”를 “r”로 오타하여 불과 一文字의 綴字 差異가 있었으나 船貨證券은 信用狀條件을 充足하지 못한 것으로 判示되었다.

한편 書類受理와 관련하여 嚴密一致의 原則을 緩和한 이른바 相當一致의 原則을 擁護하는 判例도 많이 나오고 있다.⁴⁾

Midland Bank Ltd. v. Seymour 사건⁵⁾에서 원고 Midland Bank가 발행한 신용장은 제시 서류에 대하여 “Invoice and Bill of Lading evidencing shipment of Hong Kong duck feathers 85 per cent clean, 12 bales each weighing about 190 lbs.”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제시된 送狀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물품명세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船貨證券上的 물품명은 “12 bales Hong Kong duck feathers.”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발행의뢰인인 피고 Seymour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선화증권상의 물품명세가 다르다는 이유로 발행은행인 Midland Bank의 보상청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데브린 판사는 “全體로서의 書類의 세트(the set of documents as a whole)에 記載되고 또한 그 서류는 각각 有效하고 相互矛盾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充分하다.”라고 하여 제시된 선화증권은 신용장에 適合한 것으로 判示하였다.

서류의 일치성 판단과 관련하여 國際商業會議所의 銀行委員會의 의견을 살펴보면 홍콩의 Wing Hang Bank로부터 “포장명세서가 물품의 명세를 표시하지 않고 상업송장상의 명세와 일치된다는 내용의 세부 명세(물품 수량, 스타일 번호, 상업송장 번호)를 표시할 경우 이를 불일치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불일치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의 기재 내용간에 充分한 連繫(sufficient link)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하기 때문이다. 서류에서 포장명세서는 UCP 500 제 21 조(特定하지 않는 발행자 또는 서류의 내용)가 適用된다. 따라서 신용장상에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경우 포장명세서는

4) *Laudisi v. American Exchange National Bank*, [1924] 239 N.Y. 234, 146 N.E. 347; *Transamerica Delaval Inc. v. Seymour*, [1955] 2 Lloyd's Rep. 147; *Flagship Cruises Ltd. v. New England Merchant National Bank of Boston*, [1978] 1st Cir.; *First Nat'l Bank of Atlanta v. Wynne*, 256 S.E. 2d 383 (Ga. Ct. App. 1979); *First Arlington Nat'l Bank v. Stathis*, 413 N.E. 2d 1288 (Ill. App. Ct. 1981); *Mount Prospect State Bank v. Marine Midland Bank*, 459 N.E. 2d 979 (Ill. App. Ct. 1983); 韓國 大法院 1979. 5. 8. 宣告, 78다2006 判決.

5) [1955] 2 Lloyd's Rep. 147.

서류의 기재 내용이 기타 명시된 서류와 모순되지 않으면 그러한 서류를 제시된 대로 受理한다.”라고 見解를 밝혔다.⁶⁾

또한 Wing Hang Bank로부터 “船貨證券上에 貨物着貨通知處(notify party)를 ‘The China National Foreign Transportation Corporation’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한 신용장에서 이 名稱의 첫부분 ‘The’라는 단어가 脫字됨을 이유로 선화증권을 拒絕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가”라는 質疑에 대해 “‘The’라는 단어가 탈락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은행의 지급거절은 정당하지 않고 옳지 않다. 이와 같이 ‘The’라는 단어의 탈락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불일치로 간주될 수도 있다.”라고 답하였다.⁷⁾

이처럼 法院의 判決 역시 一貫된 판결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는 더욱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엄밀일치의 원칙은 信用狀法의 產物로 顧客과 발행은행간의 계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심사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商業的 手段을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公共性에 의존하여야 한다.⁸⁾ 이처럼 書類를 審査하는데 있어, 은행이 嚴密一致의 原則만을 고수하여 書類受理與否를 결정함으로써 서류의 기재 내용이 本質的 變更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에도 嚴密一致의 原則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는 고객인 신용장 발행의뢰인에게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代案으로 相當一致의 原則은 은행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에 대하여 불확실성과 비용을 요하는 소송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다. 그러나 신용장 관행의 기준인 신용장통일규칙 자체에는 이와 같은 “엄밀한”(strict)이나 “상당한”(substanti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치성 판단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6) *Query of Wing Hang Bank Ltd., Hong Kong*; ICC Document 470/GE.6, November 15, 1994.

7) *Query of Wing Hang Bank Ltd., Hong Kong*; ICC Document 470/GE.15, November 18, 1994.

8) John F. Dollan, “Letter of Credit Disputes between the Issuer and its Customer: The issuer’s Rights under the Misnamed Bifurcated Standard”, *150 Banking Law Journal* 5, 1988, p. 297.

2. 새로운 書類審査 基準으로서의 國際標準銀行慣行

1993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서류심사의 기준(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으로 國際標準銀行慣行(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의한다는 새로운 개념의 조항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새로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의 語義를 具體적으로 定義하고 있지는 않다. 동규정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가 文面上 신용장의 조건과 一致하고 있는가의 與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相當한 注意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 규정된 서류의 문면상 신용장의 제 조건과의 일치성은 본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國際標準銀行慣行에 따라 決定된다.”라고 하여 여기에서의 국제표준은행관행은 무엇을 말하는지 매우 抽象적이다.⁹⁾

1983년 신용장통일규칙(UCP 400)과 UCP 500에 대한 비교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용어의 도입은 자구까지 완전한 일치가 실제 불가능한 것으로 서류심사의 기능적 기준(functional standard)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법정의 실패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다.¹⁰⁾

信用狀去來에서 書類相互間에 文面上으로 矛盾되게 표시된 서류는 信用狀의 諸條件과 문면상 不一致한 것으로 看做된다. 國際商業會議所의 銀行委員會의 改正理由에 대한 註釋을 보면 信用狀 標準銀行慣行이란 “결코 獨斷的이지 않고, 怠慢하지 않고 또한 不正直하지 않고, 가장 正直하고, 熟練되고 豫見可能한 慣行을 具現하는 規範을 말한다.”(Far from being arbitrary, negligent or dishonest, letter of credit standard banking practice contains the rules the embody the most honest, skillful and predictable practices)라고 定義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에서 모든 서류심사를 담당하는 자는 항상 “正直하고 思慮깊은 銀行員은 이러한 狀況下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What would an honest, knowledgeable banker do under the circumstances?)를 留意할 必要가 있다.¹¹⁾

9) UCP 500, Article 13-a.

10) Charles del Busto,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Howard N. Bennett,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ts Present and Future”, *The Korean International Commerce Law Review*,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Commerce, 1995, p. 46.

11) ICC, Document No. 470/-37/4, May 27, 1991.

이와 같이 국제표준은행관행은 서류심사에 상당한 주의 의무에 관한 은행의 의무를 制限하려는 意圖은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範圍를 決定하고자 하는 것이다. UCP 500 改正作業中에 일부 會員國에서 標準銀行慣行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設定할 것을 要求하였으나, 이러한 관행을 별도로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結論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이미 표준은행관행이 包含되어 있다. 예를 들면 物品의 明細가 文面上(on their face) 一致를 어떻게 審査할 것인가 하는 問題로 UCP 400의 제 41 조¹²⁾에서도 상업송장과 기타 서류와의 物품명세를 구별하고 있다. 즉,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商業送狀上의 物品明細는 신용장의 物품명세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모든 서류는 신용장상의 物품명세와 矛盾되지 아니하는 一般用語로 記述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商業송장과 기타 서류와의 去來의 機能의 相異點에 대하여 標準銀行慣行을 反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國際標準銀行慣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신용장통일규칙상에는 표준은행관행에 대하여 具體的인 규정은 없으나 銀行員들은 그들의 業務處理指針 및 國際商業會議所의 關聯 刊行物, 예컨대 銀行委員會의 意見 및 決定資料를 통한 右권해석 등을 통해 熟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貿易環境의 變化에 따라 電子的 去來慣行의 普遍化에 따라 신용장도 電子的 電送方法 사용이 增大되어 특히 世界銀行間金融通信協會(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SWIFT)의 連結網(network)을 통한 신용장 통지 등 標準化된 電信文 사용이 急增하고 있고, 電子文書交換方式(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이 종이 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국제상거래규칙들도 마련되어 은행관행도 이에 副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³⁾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국제표준은행관행의 導入은 서류상 本質的인 重要한 瑕疵事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字句 하나 하나의 嚴密一致만을 고집하여 尤리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銀行원이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서류를 심사한다면 些少한 是非를 모두 法廷의 判決로 解決하려는 試圖도 어느 정도는 減少시킬 수 있을 것이다.

12) UCP 500, Article 37-c.

13) ICC, Document No. 470/-37/4, May 27, 1991.

Ⅲ. 書類審査基準과 그 適用

1. 文面上的의 形式審査

銀行은 書類가 一般的 狀態性의 形式(form)을 具備하고 있는지 또한 그 서류가 과연 法律上 完全하고 有效한 지 偽造 또는 變造가 없는지 등에 관해서 까지 保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은행은 서류의 裏面에 있는 물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서류의 문면만을 점검한다.¹⁴⁾ 신용장이 서류의 형식에 대해 특히 요구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은 제시된 서류의 形式을 상세히 점검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¹⁵⁾ 따라서 신용장에 具體的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提供된 書類의 種類, 通數 및 서류의 記載事項이 商去來上 不充分하다 해도, 그 점에 대해 은행은 조금도 책임을 負擔하지 않는다.

또한 서류의 正確性(accuracy)에 대해서는 서류의 기재 내용이 事實關係를 正確히 표시하고 있을 것과 그 計算이 正確히 되어 있을 것으로 解釋되나, 비록 不正確한 것이었다 해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예로 計算 相違點에 관련된 파푸아 뉴기니아 所在의 銀行으로부터의 木材 容積證明書의 計算 內容明細까지 買入銀行이 點檢해야 할 義務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제상업회의소는 “書類의 文面上 計算相違가 明確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의 명세를 點檢할 필요는 없다.”라고 回信하였다.¹⁶⁾

이와 같이 은행은 書類 自體에 관하여 모든 形式, 充分性, 正確性, 위조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免責이 된다. 은행은 제시된 서류상에 明記 또는 이에 附記된 一般條件 및 特別條件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¹⁷⁾ 이것은 船貨證券을 포함하는 運送書類(transport document) 혹은 保險書類(insurance document) 등에 인쇄되어 있는 一般約款이나 附加되어 있는 特殊約款의 내용

14)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queries, answers*, ICC Publishing S.A., 1989, p. 60.

15) UCP 500, Article 13.

16) ICC, Documents 470/425, January 17, 1984.

17) UCP 500, Article 15.

에 대하여 專門的 知識을 갖고 있지 않은 銀行에 點檢義務를 지우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統一商法典에서도 발행은행은 문면상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를 가지고 서류를 점검하여야 하며, 별도의 合意가 없는 한 文面上 正確性을 檢査함에 있어서 書類의 眞正性, 偽造·變造, 또는 그 效力에 대하여 아무런 義務 및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은행은 眞正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에 대한 支給은 保護되지만 書類가 偽造된 사실을 미리 알거나 은행측의 義務를 懈怠(negligence)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¹⁹⁾

國際商業會議所는 방글라데시의 어떤 은행이 “어음이 取消不能貨換信用狀下에서 어떤 은행에 의하여 정히 買入되었으며, 買入銀行은 償還(reimbursement)을 받았고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船積書類를 받자마자 해당 선화증권이 偽造되었다고 텔렉스로 알렸는데 매입은행이 이 代金을 돌려줄 責任이 있는지의 與否에 대해 알려주기 바란다.”는 要請에 대하여 法院의 判決結果와 一致되는 見解임을 밝히고 “偽造된 것으로 判明된 船貨證券을 송부한 買入銀行은 서류의 유효성에 따른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만, 단 매입은행이 위조한 當事者이거나 서류의 提示前에 偽造된 것을 認知했거나 相當한 주의를 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서류의 문면상 위조된 것이 명확한 경우는 예외이다.”라고 하였다.²⁰⁾

이와 같이 換어음의 買入銀行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虛偽 또는 偽造 등의 形式的 調查義務는 있으나 實質的 調查義務는 없기 때문에 外觀上의 書類檢討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신용장 발행은행이 스스로 수익자에 대해 支給·引受를 행할 경우에 虛偽의 事實을 알면서 支給·引受를 행해서는 안된다. 제시된 證券이 外觀上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은행에게 支給義務를 부담시키는 것은 신용장 목적의 하나인 신속·정확한 지급을 實現하기 위해서이다.

銀行은 賣渡人의 欺罔行爲를 알면서 지급하는 것은 신용장 제도의 목적에

18) UCC Article 5-109(2); UCC, Article 5-114 (2) b.

19) Henry Harfield, *Bank Credits and Acceptance*, The Ronald Company, New York, 1974, p. 80; H. 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Europa Publications Ltd., London, 1984, p. 179.

20) ICC, Documents 470/371. 470/373, December 9, 1980.

어긋날 뿐만 아니라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이다. 여기에 대해서 핀켈스타인(Finkelstein)은 “偽造된 書類(forged document)라고 하는 것은 발행은행의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偽造된 것을 알면서 지급하는 것은 越權行爲이다.”라고 하고 있다.²¹⁾ 또한 발행은행은 수익자에 대해서 眞正한 證券과 償還으로 支給義務를 지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제공된 證券의 偽造 또는 變造된 것이라는 것이 明白한 경우에는 國內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支給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過失이 없이 偽造·變造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급했을 때에는 은행의 면책으로 인정하여 買受人에 대해서 損失 補償을 請求할 수 있는 것이다.²²⁾

2. 銀行의 相當한 注意義務

UCP 500에서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²³⁾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를 심사하는 銀行의 相當한 注意(reasonable care)란 語義上 “受任人은 委任의 本旨에 따라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委任事務를 處理하여야 한다.”라는 韓國 民法(제 681 조)상의 “受任人의 善管義務”에 規定하고 있는 정도의 주의로 볼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 특히 통지은행의 경우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신용장의 내용에까지 眞正性(authenticity)을 확인해야 할 책임은 없으나 최소한 외관상의 眞正性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발행은행에 알려야 한다²⁴⁾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은행과의 환거래약정(correspondent agreement), 서명감(signature book), 전신 암호(test key), 스위프

21) Herman N. Finkelstein, *Legal Aspects of Commercial Letters of Credit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0, p. 239.

22) *Maurice O'Meara Co. v. National Park Bank*, [1925] 39 A. I. R.; *Sztejn v. Henry Schroder Banking Corporation*, [1941] 31 n.y. Supp. (2d) 631, 634; *Gian Singh & Co., Ltd. v. Banque de l'Indochine*, [1974] 2 Lloyd's Rep. 1; *Edward Owen Engineering Ltd. v. Barclays Bank International Ltd.* [1978] 1 Lloyd's Rep. 166; *The American Accord*, [1979] 1 Lloyd's Rep. 267; 大法院 1993.12.24.宣告 93다15632 判決.

23) UCP 500, Article 13-a.

24) UCP 500, Article 7.

트 지침서(SWIFT Handbook)에 의하여 그 진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無書類條件의 審査

UCP 500에서는 신용장이 그와 一致하게 提示하여야 할 서류에 대한 언급 없이 條件(conditions)만을 包含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無視한다고²⁵⁾ 새로이 規定하고 있다. 이는 곧 신용장거래는 書類去來임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書類의 言及이 없는 조건의 허용을 擁護하는 者들은 서류 없는 조건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기타 조건 중에 信用狀 有效期日 또는 書類提示期日과 같은 것들은 어떠한 서류 제시를 지정하지 않아도 確定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論爭은 誤解에 기인하고 있다. “conditions”는 “term”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근 2천년 동안 國際商去來法은 未來 또는 不確實한 條件인 “conditions”와 確實히 發生되는 條件인 “term”를 區別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가 달력의 效力을 有效하다고 한다면 信用狀發行日과 有效期日은 “term”이지 “conditions”가 아니다. 이에 반하여 신용장상에 서류에 관하여 기재된 조건은 앞으로 서류를 제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conditions”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書類에 관한 言及없이 條件만을 明示하고 있는 것은 銀行이 無視한다는 것이다.

國際商業會議所 銀行委員會에서도 신용장상 書類에 관한 言及 없이 條件만 要求하는 것은 무시하며 그 取扱에 있어서도 쓸데없는 文句로 看做하는 방법을 택하였다.²⁶⁾ 따라서 신용장 발행의뢰인이나 발행은행은 신용장에 요구서류를 반드시 지정한 후 “conditions”를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에 의한 서류점검의 기준(standard)도 “conditions”, 즉 신용장조건이라는 원칙이 성립되는 것이다.

UCP 500 이후 無書類條件으로 解釋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國際商業會議所의 有權解釋을 살펴보기로 한다. Malta의 Mid-Med Bank로부터 “신용장에서 ‘shipment to be seafreight vessel sailing to Mombasa port via Suez’라고 규정된 경우에 은행은 이와 一致시키기 위하여 선화증권에 이와 같은 履行

25) UCP 500, Article 13-c.

26) Chales del Busto, *op. cit.*, pp. 42~43.

의 표시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質疑에 대해 國際商業會議所 銀行委員會는 “UCP 제 23 조(해상/해양선화증권)의 요구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은행은 이와 같은 표현이 신용장과 서류 자체간에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海上運送 船舶은 스웨즈를 경유하여 항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해상선화증권상에 명시를 요구함으로써 正當化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신용장상에 명시된 어떠한 서류에 분명하게 連繫되어 질 수 있다면 그 조건은 무서류조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신용장이 해상선화증권을 요구한 이상 사실상 조건이 충분히 연계되어질 수 있는 서류로 봐야 한다.”라고 답하였다.²⁷⁾ 이처럼 관련 서류에 대한 言及이 있는 경우에는 무서류조건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書類審査期間과 通知

貿易去來에서는 短期間內에 어떠한 義務履行을 위한 時間을 정한다는 것은 狀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事實上的 問題(questions of fact)로 다루고 있는 것이 一般的이다. 그러나 발행은행의 클레임 결정에 대하여 UCP 500에서는 “發行銀行 또는 確認銀行(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代身하여 行動하는 指定銀行(nominated bank)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동 은행은 書類受領 다음날로부터 第7銀行營業日의 마감 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電信 또는 그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타 迅速한 手段으로 그러한 趣旨를 通知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통지는 서류를 송부한 은행으로부터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直接 受領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⁸⁾ 클레임 처리에 있어서 모든 不一致書類는 신용장에 의한 당해 書類買入에 따른 불일치 사항을 하나 하나씩 指摘하여 連續적으로 通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불일치 서류에 대한 통지는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의 거절 통지, 즉 不渡返還을 하는 통지에는 瑕疵事項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는 은행이 서류제시인의 處分(disposal)에 일임하여 서류를 留保하고 있는지 또는 返送하였는지를 明示하여야 한다.

27) *Query of Mid-Med Bank, Malta*; ICC Document 470/GE. 13, Nov. 28, 1994.

28) UCP 500, Article 14-d-i.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極東의 한 은행으로부터 수익자가 서류송부은행이 보낸 서류가 불일치가 있어 발행은행에 의해서 서류의 수리가 거절되었음을 밝히면서 나중에, 즉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 불일치를 치유하여 다시 제출하여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수익자 및 서류송부은행이 서류가 유효기일 以前에 제시되고 신용장에서 제시 기간이 명시되었다면 그 기간 이내에 제시되고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면 항상 일치되는 서류를 다시 제시할 수 있다는 見解를 밝혔다.²⁹⁾ 또한 만일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 불일치되는 서류를 일치되는 서류로 대체할 경우 발행은행의 승인 없이도 가능한가라는 미국의 National Sun Industries의 질의에 대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발행은행의 특별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였다.³⁰⁾

5. 不一致書類에 대한 權利拋棄의 交渉

신용장거래에서는 信用狀文面上的의 조건과 提示書類 또는 서류상호간에 矛盾이 있으면 不一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은행의 書類審査義務는 무거워진다. 국제상업회의소의 은행위원회에서는 서류의 일치성(consistency of documents)에 대하여 “一致”라는 문구는 모든 서류가 同一去來에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 즉 각 서류가 문면상 다른 書類와 關係(連繫)가 있다는 것과 모든 서류가 상호 불일치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決定하고 있다.³¹⁾ 書類上 信用狀 自體가 信用狀發行銀行의 條件附支給確約³²⁾(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이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에서 不一致書類 提示에 대한 受理나 クレーム 決定者는 발행은행이 된다는 원칙은 當然하다고 할 수 있다.

신용장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依頼와 指示에 따라 행동하는 이상 접수한 서류가 지시된 것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引受해서는 안되고, 동 서류에 의한 支給·引受 또는 買入銀行에 대하여 クレーム를 제기하여 발행의뢰인의

29) ICC, Documents 470/273, 470/278, March 8, 1976.

30) *Query of National Sun Industries, Minnesota*; ICC Document 47/GE. 10, September 27, 1994.

31) ICC Documents 470/328, 470/390, April 14, 1978.

32) ICC,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 ICC Publishing S.A., 1985, p. 6.

이익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발행은행이 접수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것을 발견하고, 클레임 提起에 대한 可否의 決定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과 協議하여 決定할 事項인가 아니면 발행은행의 獨自的인 判斷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먼저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에게 클레임 제기의 可否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이유는 클레임의 正當性을 顧客에게 확인받는 의미가 있으나, 受益者로부터 이미 불일치 서류에 관하여 諒解를 要請해 와 있고, 또한 이를 “指示·委任”의 견지에서 생각하면 발행은행은 委任者이자 指示人인 발행의뢰인에게 조건 불일치를 통지하고, 또한 조건 불일치의 내용을 容認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委任과 指示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지시대로 제공된 서류에 대해서는 支給·引受·買入銀行에 대하여 이를 受理하고 또 지급·인수 또는 償還할 의무를 지지만 발행의뢰인도 이 사실을 이미 양해하고 있을 경우에는 클레임을 제기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實利的인 效果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발행의뢰인은 條件附 一致를 追認(ratification)하고 발행은행이 서류를 수리, 償還하는 것을 承諾하게 될 것이다.³³⁾ 사실 이와 같은 追認은 窮極的으로 서류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 不正確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발생되고 있다.³⁴⁾

한편 指示와 相異한 書類에 대해서는 이들 은행에 대해 서류 수리를 拒否하고 또 支給·引受·償還을 拒絶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조건 불일치 서류를 지시와 다른 서류의 경우, 발행은행은 이를 容認與否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발행의뢰인의 委任의 範圍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發行依頼人의 指示를 기다려야 한다. 발행은행이 조건 불일치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承認하여 受理하거나, 만약 발행의뢰인이 이것을 수리하지 않고 償還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발행은행은 窮地에 몰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도 발행은행은 事前에 發行依頼人의 意見を 물어야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신용장거래에서는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과 協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³⁵⁾

33) 小峯 登, 1974年信用狀統一規則(上卷), 外國爲替貿易研究會, 1974, p. 395.

34) 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op. cit.*, p. 206; *Westminster Bank. Ltd. v. Banca Nazionale di Credito*, [1928] 31 Ll. L. Rep. 306.

35) 小峯 登, 前掲書, p. 447.

反面에 信用狀發行이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간에 “信用狀發行契約”의 견지에서 말하면 發行銀行은 신용장의 債務者이기 때문에 동 은행의 判斷으로 신용장조건 불일치의 내용에 대해 이를 許容할 것인가 與否를 決定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의 의견을 묻는 것은 스스로의 判斷을 決定하기 위한 去來上의 便宜措置라고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³⁶⁾ 一般적으로 발행은행이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서류를 發見하였을 경우에는 클레임 提起 以前에 발행의뢰인에게 問議하는 것이 하나의 慣例로 되어 있다.³⁷⁾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UCP 500에서는 “書類가 文面上 信用狀의 條件과 一致하지 아니한 것으로 決定한 경우에는 發行銀行은 獨自的인 判斷으로 發行 依頼人과 그 不一致에 관한 權利拋棄(waiver of the discrepancy)의 與否를 交渉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³⁸⁾ 이 規定은 條件不一致에 대한 발행의뢰인의 權利拋棄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국제은행관행으로 수익자에게 銀行 債務의 獨立性を 어떻게 調和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신용장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과의 契約, 즉 信用狀去來約定을 援用하여 不一致書類에 관하여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사이에 合意決定을 許容하는 것은 正當化할 수 없다. 서류에 대한 지급이나 거절에 대한 결정은 發行銀行의 權利인 것이다. 發行依頼人과의 交渉은 不一致書類의 拒絶을 決定하는 發行銀行의 獨自的인 判斷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³⁹⁾ 이와 같이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지만, 발행의뢰인과 交渉하여 발행의뢰인의 權利拋棄가 있다면 國際標準銀行 慣行에 따라 發行銀行의 자유로운 裁量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것이다.

36) 上掲書, p. 446; 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op. cit.*, p. 204.

37) F.M. Ventris, *Bankers' Documentary Credits*, 3rd ed.,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0, p. 17.

38) UCP 500, Article 14-c.

39) Charles del Busto,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pp. 46~47.

IV. 書類審査基準 適用上の 問題點

1. 國際標準銀行慣行에 대한 概念의 抽象性

신용장에 요구한 提示書類의 一致性判斷은 전통적인 법률원칙도 一貫性 있는 서류심사기준을 提供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된지 60년만에 새로운 概念의 用語를 導入하여 은행의 서류심사기준으로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그 意義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신용장에 規定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一致하고 있는가의 與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相當한 注意義務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 규정된 서류의 일치성은 신용장통일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은행표준관행에 따라 決定된다.”라고 한 것은⁴⁰⁾ 일치성 판단에 대해 신용장통일규칙의 어느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인지 具體的으로 把握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은 상당일치의 원칙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만일 국제표준은행관행이 사소한 誤記를 無視하는 것으로 의도하는 趣旨였다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本質的으로 重大한 瑕疵가 아니라면 클레임 提起를 하지 않아야 한다.⁴¹⁾ 그러나 發行銀行의 資金運用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발행의뢰인과의 협조 관계를 갖고 意圖的으로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시 서류의 字句 하나 하나의 一致를 따져 클레임 提起를 하는 경우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 모두 解決될 수 있는 것인지 疑問스럽다.

2. 銀行裁量權의 濫用

신용장통일규칙이 誕生되어 제 5차 改正에 이르고 있지만 은행의 서류의 受

40) UCP 400 Article 13-a.

41) 信用狀에 表示된 金額, 數量 또는 單價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about”, “circa” 등은 모든 서류에 共通的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相當一致의 原則은 適用되지 아니한다; *Banco Espanol de credito. v.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 [1967] 1st cir., 385 F. 230.

理 또는 拒絶을 위한 明確한 基準을 廣範圍하게 統一規則 속에서 반드시 언제나 찾아낼 수는 없다. 은행의 불일치서류 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는 國家, 地域, 銀行에 따라 제각기 다른 傳統과 見解가 있다. 이러한 多樣性이 바로 1962년 제2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을 개정할 때까지 英國이 統一規則을 採擇하지 못했던 主要原因 중의 하나였다. 왜냐하면, 은행의 결정에 대한 自由를 그렇게 너무 많이 制限하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負擔이 되어 顧客의 利益이 侵害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⁴²⁾

국제표준은행관행은 완전히 자유로운 自體의 職務的인 專門知識과 商慣習에 의하여 決定되기 때문에 신용장 발행의뢰인도 은행의 직무적인 결정에는 承服해야 할지 여부가 문제시된다. 이를테면 化工藥品의 物品明細에 綴字 한 자가 빠진 것을 은행의 裁量權으로 支給履行이 이루어졌을 때, 발행의뢰인의 입장에서 본質的인 重大한 瑕疵이기 때문에 輸入通關上 이로 인한 損失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UCP 500의 改正案 註釋上에는 실제로 統一規則上 여러 곳에서 銀行標準慣行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입장에서의 具體的인 基準이 設定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서류의 일치성에 관하여 은행의 書類審査者의 主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嚴密한 一致”(strict compliance), “相當한 一致”(substantial compliance), “相當한 注意”(reasonable care)가 각각 具體的으로 어느 範圍까지 條件不一致與否를 判斷할 수 있는지 그 基準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악용될 소지도 있으며 銀行裁量權이 濫用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3. 書類審査期間 最大活用に 따른 遲延利子の 發生

현행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기까지는 발행은행이 서류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클레임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特定시키지 않고 좀 막연하지만 相當한 期間(reasonable time)을 享有할 수 있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었다.⁴³⁾ 상당한 기

42) Johannes C.D. Jahn, *Zahlung and Zahlungssicherung im Aussenhandel*,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 New York, 1976(姜甲善 譯, 貿易決濟論, 法文社, 1977, p. 133).

43) UCP 400 Article 16-c.

간은 信用狀金額, 書類通數, 書類의 複雜性, 書類上의 言語, 目的地 物品到着 與否 등 관련된 諸要因을 고려하여⁴⁴⁾ 去來狀況에 따라 彈力的으로 對應하여 클레임 결정의 신중을 기한다는 데에는 支持를 받을 수 있었다. 엘링거(Ellinger) 교수는 “서류심사를 위한 합리적 기간”이라는 그의 논문⁴⁵⁾에서 서류심사시간의 合理的 期間의 一般化를 試圖하면서 서류심사시간은 기본적으로 5~6 영업일이 所要되고 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심사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7~8 일 기간이 支持될 것임을 主張하였다.

그러나 서류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不當한 遲延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여러 國際商業會議所 國內委員會로부터 特定시킬 수 없는가에 대한 問議 등을 참작하여,⁴⁶⁾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UCP 500에서는 書類受領翌日로부터 第7銀行營業日까지로 特定시키게 되었다.⁴⁷⁾ 기간을 특정시킨 것은 발행은행의 서류의 受理 與否에 대한 不當한 遲延問題를 防止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은행들은 最大한 滿期日까지 留保하고 支給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 1~2일만에 서류를 점검하여 支給履行 또는 클레임 與否를 通知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통일규칙상에 규정된 7영업일까지 最大한 기다릴 수도 있다.

이는 은행이 특정된 서류심사기간 최대 활용으로 수익자의 서류 買入銀行側에 代金入金이 遲延될 수 있다. 즉, 受益者가 書類買入當日에 適用한 往復標準郵便日數에 相當하는 換價料⁴⁸⁾(exchange commission)를 適用하여 매입한 買入元金이 標準郵便日數보다 며칠 늦게 決濟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신속한 서류송부 및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遲延利子(delay interest; delay charge) 發生頻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負擔利子도 많아질 수도 있다.

44) F.R. Ryder and E.P. Ellinger, “Reasonable time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Journal of Business Law*, Stevens, September, 1985, p. 407.

45) *ibid.*, pp. 406~408.

46)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queries, answers*, ICC Publishing S.A., 1989, Case Nos. 48~51.

47) UCP 400 Article 13-b, 14-d.

48) 韓國의 外國換銀行에서는 東南亞地域中 일본 엔(Yen)貨, 말레이시아 링기트(Ringgit)貨, 싱가포르 달러(Dollar)貨, 홍콩 달러(Dollar)貨의 4개 地域 通貨에 대해서는 9일간의 換價料를, 再買入(renegotiation)분에 대해서는 12일, 其他 通貨에 대해서는 11일에 相當하는 換價料를 一覽出給換어음의 書類買入時에 控除하고 있다.

4. 不一致書類 通知義務와 禁反言

不一致書類에 대해서 은행은 서류 수령 翌日로부터 제 7 은행영업일 이내에 수익자의 處分에 맡겨 서류를 保有하고 있거나 서류가 返送되고 있음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Datapoint Corp. v. M&I Bank 사건⁴⁹⁾에서, 수익자는 신용장 유효기일 전날 서류를 제시하였다. 환어음에 불일치가 있어 발행은행은 지급거절을 결정하였고, 즉시 서류와 지급거절통지를 우편으로 서류제시은행에 발송하였다. 발행은행은 수익자가 환어음의 불일치를 治癒할 수 있도록 그 통지를 수익자에게 신속하게 전화로 통지(팩시밀리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으로 통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수익자가 불일치 서류를 치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발행은행은 수익자가 불일치 서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수익자에게 통지할 合理的인 努力을 할 의무가 있다고 判定하였다. 이 사건의 示唆點은 만일 有效期間이 臨迫할 경우에는 수익자가 불일치 내용을 치유할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신속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장에 대해서 禁反言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발행은행과 수익자의 쌍방의 행동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발행은행으로부터 서류의 不一致가 지적된다면 수익자가 이를 修正한 다음,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 再提出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을 準據할 때 발행은행의 불일치 서류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은행에게 債務不履行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英美法에 있어 表示 내지 約束에 의한 禁反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피표시자)에 대한 발행은행(표시자)의 표시가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금반언원칙의 적용에 있어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불일치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던 것이 수익자와의 관계에서 非難되어야 할 정도의 不誠實로 인정되어 通知義務違反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9) 49 Ohio App. 3d 117, 550 N.E. 2d 971 [1988].

5. 留保附 또는 補償狀附 買入과 權利拋棄

留保附(under reserve) 또는 補償狀附(against indemnity)에 대한 지급은 그것이 換信狀과는 獨立되는 別途의 契約을 構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보부 지급은 관행적으로 엄밀일치의 원칙에 대하여 均衡을 維持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왔다 할 것이다.

留保附나 補償狀附로 書類를 買入하였다 하더라도 발행은행 내지 발행의뢰인에 의해 受理되지 않으면, 즉 追認(ratification)이 없는 경우에는 支給拒絶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信用狀條件에 合致하지 않는 유보부나 보상장부 조건으로 매입된 서류에 대하여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를 送付하여 온 은행 또는 書類를 受益者⁵⁰⁾로부터 직접 受領하였으면 수익자에게 서류를 返還하여야 한다.

小峯 登 教授에 의하면 留保附란 “條件不一致의 서류는 발행은행 내지 발행의뢰인의 容認된 경우에 한하여 서류가 발행의뢰인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다.”는 식의 유보로서 추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입은행은 당연히 수익자로 溯及하는 權利가 생기는 約定으로 受益者가 위와 같은 趣旨를 매입은행에 差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補償狀附란 受益者가 매입은행에 差入證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래 경우에 따라 신용장조건 不一致內容에 의해 수익자가 作成해야 하는 것으로 은행 측이 “Letter of Guarantee”와 같은 樣式을 만들어 그 보상문언은 주로 은행의 損害를 補償하는 約定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民法上的 狹義의 保證의 뜻으로 取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換어음의 不渡에 의한 買入銀行의 損害를 수익자가 擔保한다고 하는 廣義의 保證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⁵¹⁾

따라서 留保附 買入은 單純한 約束下에 書類를 買入하는 것이고, 補償狀附

50) 受益者로부터 發行銀行에 直接 送付되어 오는 경우는 ① 발행은행이, 引受 또는 買入銀行으로서 履行을 指定한 경우, ②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 이외의 指定銀行이 支給, 引受 또는 買入을 拒絶한 경우, ③ 指定銀行의 營業이 天災, 暴動, 戰爭 등 소위 不可抗力에 의해 또는 同盟罷業과 工場閉鎖 등에 의하여 中斷된 경우, ④ 受益者가 買入을 依頼할 銀行을 수익자가 찾지 못한 경우이다; ICC, *UCP 1974/1983 Revisions Compared and Explained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shing S.A., 1984, p. 32.

51) 小峯 登, 前掲書 p. 433; Henry Harfield, *op. cit.*, pp. 113~115.

買入은 法的 書類의 差入下에 買入하는 것이다.

書類送付銀行이 서류의 瑕疵事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支給, 延支給確約, 引受 또는 買入이 留保 또는 補償狀附로 이루어졌음을 通知하는 경우, 不渡返還을 할 때 발행은행이나 확인신용장하의 확인은행은 서류 송부은행으로부터 이러한 서류상의 瑕疵를 周知하고 있으므로, 이미 언급한 내용의 서류 拒絶權行使를 위한 通知義務를 怠慢히 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를 怠慢하였을 경우에는 발행은행이나 確認信用狀 하의 확인은행의 의무는 免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留意하여야 한다.⁵²⁾ 이러한 유보조건이나 보증조건은 오직 서류 송부은행과 유보 대상이 된 대상자, 보상 조건을 제시한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 사이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친다.⁵³⁾

실제로 受益者나 銀行은 신용장거래가 瑕疵있는 유보부 또는 보상장부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信賴性에 바탕을 두고 經濟的 目的을 充足시키고 있다.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서류가 留保附 買入(under reserve negotiation)이 되어 제시되거나 불일치가 발행은행에서 나중에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발행의뢰인이 서류를 인수할 것에 동의하게 되면 발행은행도 따라서 지급이행하게 된다. 만일 書類送付銀行에서 電信照會後 買入條件으로 수리 여부에 대하여 電信回信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송부은행에서 推尋方式(collection basis)으로 보내 오는 경우에는 서류를 심사하고 決濟與否를 判斷하여 推尋指示書(collection instruction)의 指示方法에 따라야 한다.

신용장거래를 행하는 대부분의 信用狀 受益者나 발행의뢰인은 자기의 거래은행에 基本的인 擔保物로 不動産이나 有價證券 등을 抵當시키고 있기 때문에 信用狀 受益者는 信用狀條件 不一致에 따른 클레임 問題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거래의 편이에 따라 不一致事項에 대한 補償狀을 買入銀行에 쉽게 提供하고 있다. 따라서 同 書類에 대한 支給履行 또는 클레임 提起與否 判斷은 發行銀行의 裁量權에 속한다. 이러한 理由로 해서 留保條件附 또는 補償狀附 買入 書類에 대한 受益者의 代金回收는 遲延되거나 未回收되는 경우가 많다.⁵⁴⁾ 이와

52) UCP 500 Article 14-f.

53) Dr Anu Arora, "The dilemma of an issuing bank: to accept or reject documents tendered under a letter of credit",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February, 1984, p. 87.

54) 信用狀條件 不一致로 支給拒絶(unpaid)事由가 되는 主要한 例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Late Shipment, ② Late Presentation, ③ Partial Shipment, ④ Installment Shipment, ⑤ Transshipment, ⑥ Short Shipment, ⑦ Description of

같은 不一致書類의 買入은 不渡原因이 된다. 특히 信用狀條件에서 船貨證券 原本 3通 중에서 1通을 신용장 발행의뢰인에게 수익자가 速達로 直接送付하는 條件일 경우에는, 條件不一致를 發行銀行이 追認하지 않고 拒絕하게 되면, 受益者는 物品에 대한 權利를 確保하는데 커다란 難關에 逢着할 수도 있다.

便利한 方便으로 利用되고 있는 留保附 또는 補償狀附에 의한 書類買入은 신용장거래의 本質을 위태롭게 하는 實務界의 그릇된 慣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受益者의 거래은행인 買入銀行의 입장에서는 銀行與信管理 側面에서 的 不實化要因을 提供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V. 書類審査基準의 補完策

1. 國際標準銀行慣行에 대한 具體的 審査基準 提示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조건과 提示書類의 一致性 判斷에 대하여 신용장 당사자간에 事사건건 法廷에서 해결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능한 신용장 거래당사자는 신용장거래의 準據가 되는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동 규칙에 규정된 條項이나 그 조항에 반영된 趣旨를 서류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새로운 서류심사 기준인 國際標準銀行 慣行이라는 새로운 서류심사기준은 매우 抽象的이고 包括性을 갖고 있다. UCP 500 개정 당시 국제상업회의소 스위스 국내 위원회(Swiss National Committee of the ICC)에서는 “書類點檢者는 무엇이 표준관행이며 그와 같은 관 행은 국가마다 매우 多樣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 시한 것처럼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서류심사기준에 否定的 立場을 表明한 바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서류심사 기준인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補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國際標準銀行慣行의 定義를 신용장통일규칙에 明確히 하여야 한다.

둘째, 本質的 不一致와 些少한 不一致의 範圍를 구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에

goods on invoice differs from that in the credit, ⑧ Bill of Lading, Insurance Document or Bill of Exchange not endorsed correctly, ⑨ Claused Bill of Lading, ⑩ Document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구체적인 서류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趣旨는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 協約”에서와 같이 매매계약의 成立과 관련하여 “mirror image rule”이 修正될 수 있는 範圍를 規定⁵⁵⁾하고 있는 점을 考慮할 수 있을 것이다.

2. 信用狀 및 書類에 대한 國際的 標準化의 再試圖

1960년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European Committee for Economy : UN/ECE)傘下에 대외 무역서류 간소화 및 표준화 작업부회(Working Party on the Simpl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External Trade Documents)가 설립되어⁵⁶⁾ 무역서류를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기 위하여 여기에서 나온 것이 “UN/ECE Layout Key”이다.

이 標準化에 따라 무역 서식이 國際的 統一 하에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세계 각국이 통일되게 아직까지 이 권고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무역결제 시의 서류들도 명칭은 같으나 국가나 개별 기업에 따라 다소 다른 서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도 이미 1951년 信用狀書式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하여 標準書式을 제정한 이래 1970년, 1978년, 1986년, 1993년에 각각 修正·補完하였다. 1993년(ICC Publication No. 516)의 표준 서식은 “UN/ECE Layout Key”에 기초를 두고 UCP 500의 관행에 맞추어 전송 및 전자문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를 보완하여 각국 國內委員會를 포함하여 銀行聯合會 등에 제공하고 신용장의 발행이나 조건변경통지에 따른 勸告案을 제시한 바 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익자가 작성하거나 商慣習에 따라 運送人이나 保險者가 작성하는 서류의 형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文面上의 一致性與否만을 점검하고 있다. 이 결과 무역결제서류의 서식 공란에 수익자가 임의로 융통성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不一致의 빌미를 提供하게 된다.

55)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Article 19.

56) 1972년에 “UN/ECE Working Party on Facilitation of Trade Procedures”로 개명하였다.

郵送에 의하여 통지되는 신용장도 最近의 스위프트(SWIFT)에 의한 電送方式에 의한 신용장통지 서식과 같이 보다 簡潔하게 형식화하여 과도한 물품명세나 수석어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상업송장을 포함한 국제 무역결제서류의 서식들도 기재란만 통일시킬 것이 아니라 기재 내용의 범위까지도 보다 간결하게 하도록 하여 앞으로의 무역 관행에 부합되게 國際的 基礎 위에서 標準化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신용장조건과 서류의 불일치는 더욱 減少될 것이며, 새로운 서류심사기준을 찾기 위한 銀行의 努力도 줄어들 것이다.

VI. 結 論

銀行이 書類를 審査함에 있어서 서류의 文面上 신용장 諸條件과의 一致性은 신용장통일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國際標準銀行慣行에 따라 決定된다고 하는 새로운 書類審査基準의 提示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嚴密一致의 原則과 相當一致의 原則의 二元化된 기준을 새 用語로 含蓄시켜 銀行의 立場에서 銀行의 裁量權에 따라 書類審査와 支給履行의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은 신용장조건에 일치되는 書類提示를 本質로 삼기 때문에 국제표준은행관행은 서류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은행의 相當한 注意를 制限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주의에 대한 適用範圍를 決定하고자 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UCP 500의 規則 속에 새로이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의한 서류심사 기준은 語義가 모호하고 本 規則에 반영되어 있는 慣行이란 어떠한 條項인지 매우 抽象的이고 不分明하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상당일치의 원칙적용이 곧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고 단정하여서도 안될 것이다. 국제표준은행관행은 銀行의 裁量權의 濫用을 가져올 可能性이 있다. 즉, 提示書類가 신용장과 사소한 不一致의 내용으로 간주하여 銀行이 국제표준은행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의뢰인인 輸入商에게 引渡된 서류가 사소한 불일치로 인하여 通關遲延이나 關稅評價上의 문제로 선의의 손해가 발생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問題點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提案한다.

첫째, 신용장통일규칙상에 국제표준은행관행의 語義와 審査基準에 대하여

보다 具體的으로 規定하여 名實相符한 새로운 慣行으로 定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 協約(제 19 조)에서 賣買契約의 成立과 관련하여 請約과 承諾의 完全一致의 原則 예외 조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신용장과 제시 서류 상호간에 本質的인 不一致와 些少한 不一致의 範圍를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信用狀과 代金決濟 書類에 대한 國際的인 標準化의 再試圖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불일치를 根本的으로 解消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要求되는 諸條件을 스위프트(SWIFT)에 의한 신용장 통지와 같이 보다 簡潔하게 서식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시되는 무역결제서류의 書式도 보다 간단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미래의 貿易慣行과 國際的인 基礎 위에서 신용장과 서류의 標準化에 대한 再檢討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諸書式이 單純化된다면 서류심사와 관련된 紛爭은 현저히 減少하게 될 것이다.

셋째, 提示書類가 신용장조건과 些少한 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발행의뢰인인 수입상의 實益을 고려하여 交涉權을 잘 활용하여 決濟代金에 대한 補償請求를 행하는데 對備하여야 한다.

信用狀去來는 원래 국제상거래에 따른 代金決濟의 圓滑을 도모하기 위한 商慣習의 產物이기 때문에 受益者와 買入銀行의 立場에서는 불일치의 빌미를 招來하지 않도록 보다 嚴格하게 書類를 提示하고,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에는 相互交涉을 통하여 國際標準銀行慣行에 따라 支給履行하는 것이 書類審査와 관련된 紛爭을 줄일 수 있는 捷徑이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小峯 登, 1974年信用狀統一規則(上卷), 外國爲替貿易研究會, 1974.
- Arora Dr Anu, "The dilemma of an issuing bank : to accept or reject documents tendered under a letter of credit," *Lloyd's Maritime Law*, 1984.
- Busto, Charles del,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 Dolan, John F., "Strict compliance with Letters of Credit : Striking a Fair Balance", *Banking Law Journal*, 1985.
- , *The Law of Letter of Credit*, 2nd., Warren, Gorham & Lamont, Inc., 1991.
- Ellinger, E.P.,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1970.
- Farra Stanly F., "Letter of Credit", 40 *The Business Lawyer*, May, 1985.
- Finkelstein Herman N., *Legal Aspects of Commercial Letter of Credit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0.
- Gutteridge H.C. and Megrah Maurice,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Europa Publications Ltd., 1984.
- Harfield, Henry, *Bank Credits and Acceptance*, The Ronald Company, 1974.
-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queries, answers*, Publishing S.A., 1989.
- ,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 ICC Publishing S.A., 1985.
- ,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shing S.A., 1991.
- , *Opinions (1980~1981)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Publishing S.A., 1992.
- , *UCP 1974/1983, Revisions Compared and Explained*, ICC Publishing S.A., 1984.
-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 , Document, 470/330, April 14, 1978.
- , Documents, 470/371, 470/373, December 9, 1980.
- , Document, 470/425, January 17, 1984.

- , Document, 470/-37/4, May 27, 1991.
- , Document, 470-37/37, December 6, 1991.
- Matti, Kurkela, *Letter of Credit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Ocean Publications, Inc., 1950.
- Rosenberg, L. judevit, "The Law of International Documentary Credits : Principles, Li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International Contracts and Payments*, Graham & Trotman Ltd., 1991.
- Rosenblith, Robert M., "Current Development Letter of Credit Law." *21 Uniform Commercial Law Journal*, Fall, 1988.
- , "Letter of Credit Practice : Revisiting Ongoing Problems", *24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2*, Fall, 1991.
- Ryder, F.R. and Ellinger, E.P., "Reasonable time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Journal of Business Law*, Stevens, 1985.
- Schmitthoff, Clive M., "Discrepancy of Documents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Law*, Stevens & Sons Ltd., March, 1987.
- , *Export Trade*, 9th ed, Stevens & Sons, 1990.
- Uniform Commercial Code*, 1988, 1995.
- Ventris, F.M., *Bankers' Documentary Credits*, 3rd ed.,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0.